

의안 번호	1861	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나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4.(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일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근거를 마련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근무기강의 확립(안 제2조)
- 다.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, 근무상황의 관리(안 제3조 ~ 제4조)
- 라. 휴가, 출장의 절차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(안 제7조)
- 바. 업무의 인계(안 제8조)
- 사. 서류보관 등(안 제9조)

4. 근거법규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5. 검토의견

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칙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